

【붙임9】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4년도 CCTV 유지보수 용역
- 제 품 명 : 차량번호판독기 및 센터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일체
- 발 주 기 관 : 하동군
- 공 급 사 : (주)새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CCTV 유지보수 용역” 중 “차량번호판독기 및 센터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일체, 주차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을 낙찰자에게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기술의 필요로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기술·품질 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기술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삼천만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제4조(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급사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3 년 월 일

발 주 기 관 : 하동군 (인)

공 급 사 : (주)새움 (인)



【붙임9】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4년도 CCTV 유지보수 용역
- 제 품 명 : 차량번호판독기 및 센터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일체
- 발 주 기 관 : 하동군
- 공 급 사 : (주)새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CCTV 유지보수 용역” 중 “차량번호판독기 및 센터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일체, 주차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을 낙찰자에게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기술의 필요로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기술·품질 등의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기술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삼천만원(부가세포함) 이 내로 한다.

제4조(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급사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3 년 월 일

발 주 기 관 : 하동군 (인)

공 급 사 : (주)새움

